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1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65

### I. 동의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Think Tank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 질 향상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 시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의 공공보건 의료정책 수립과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재단 운영 경비 출연 필요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sup>1)</sup> 및 같은 법 제18조제3항<sup>2)</sup>에 의거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출연이 가능하며 이에 2019년 세출예산안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임.

### 2 공공보건의료재단 일반현황

#### 가.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 재단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플랫폼 구축 등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략)
  - ② (생략)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생략)
-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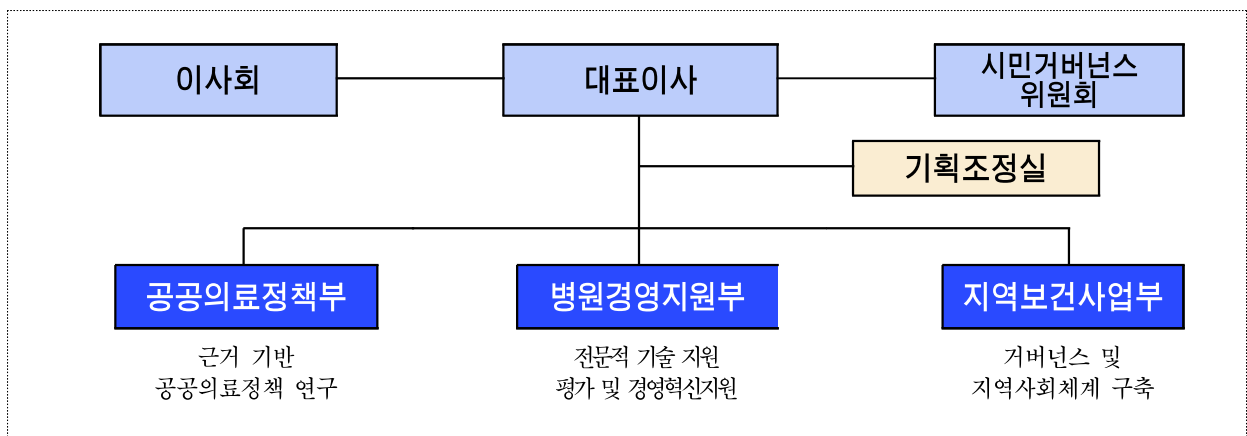
<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범위<sup>3)</sup>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 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조직과 인력 관련하여

- 재단은 3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하에 공공의료정책부, 병원경영지원부, 지역보건사업부의 3부가 존재하며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획조정실이 1실로 구성되어 있음.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조직도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공공의료정책부는

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4조와 동일.

정책연구 및 사업평가와 교육훈련이 주된 내용이며 병원경영지원부의 경우 시립병원 관리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경영혁신지원, 컨설팅과 평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건부의 경우 거버넌스 확장, 전달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획조정실의 경우 재단의 행정적인 부분 전반을 관리하고 있음.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업무
공공의료정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정책수립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연구, 빅데이터 등에 관한 사항</li> <li>○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li> </ul>
병원경영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병원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시립병원 평가 및 컨설팅·경영혁신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시립병원 관련 통계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업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사항</li> </ul>
지역사회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li> <li>○ 보건의료 분야 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사회중심 사업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li> </ul>
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전략기획, 경영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조직·인사·노무·복무·직원평가·후생복지·교육·급여에 관한 사항</li> <li>○ 자금 및 기금 운용, 예산집행 및 결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li> </ul>

- 인력을 살펴보면 현재 정원은 30명으로 나타나며 현원은 24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음.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5등급의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직제에서 1~3명 사이의 부족인원이 나타나고 있음.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현원표

(단위 : 명, '18. 7월 현재)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0	1	3	4	5	8	9
현원	24	1	2	3	5	7	6

다. 예산과 관련하여

- 재단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지출하는 출연금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이 됨. 2017년은 29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8년은 48억3천만원<sup>4)</sup>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9년의 경우 본 출연동의안의 의결여부에 따라 예산편성 될 예정임.

\* 2018년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약 32.2%)와 사업비(약 41.2%)로 구성되어 있음. 정현원과 관련하여 부족한 정원을 채우게 된다면 2019년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8 예산(안)	2017 최종예산	증 감	%	비 고
계	4,830,553	2,919,273	1,911,280	65.5	
인 건 비	1,560,652	614,074	946,578	154.1	
운 영 비	815,562	1,039,449	(△)223,887	(△)21.5	
사 업 비	1,990,000	565,750	1,424,250	251.7	
기 본 재 산	0	700,000	(△)700,000	(△)100	
예 비 비	464,339	-	464,339	-	

라.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 2018년 현재 재단은 혁신싱크탱크, 전문기술지원, 거버넌스 플랫폼의

4) 전년도 이익잉여금 10억 7천만원 포함된 것임. 2018년 시민건강국에서 출연한 금액은 37억5천만원임.



총 3개 정책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 35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정책사업을 예산순으로 살펴보면 혁신싱크탱크관련 예산이 약 9억5백만원으로 3개 사업 10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지원이 8억1천5백만원으로 4개 사업 16개 과제를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플랫폼 사업은 4개 사업 9개 과제를 수행하며 예산은 2억7천만원임.
-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경영적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공공보건의료재단 사업(2018년)

단위 사업	세부사업 및 편성목	지출예산(천원)
총계		1,990,000
혁신싱크탱크	소 계	905,000
	[세부사업] 핵심보건의료정책연구	255,000
	[과제01] 시립병원 비급여 모니터링체계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55,000
	[과제02] 서울시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분석 연구	50,000
	[과제03]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동향 리포트 발간	30,000
	[과제04]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70,000
	[과제05] 생애주기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분석 연구	50,000
	[세부사업]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30,000
	[과제06] 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 구축	450,000
	[과제07] 서울시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80,000
	[세부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120,000
	[과제08] 서울시 보건의료자원 MAP 구축	60,000
	[과제09] 제7기(2019-2022)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10,000
	[과제10] 2018년 서울시민 보건의료정책 요구도 조사 연구	50,000
전문기술지원	소 계	815,000
	[세부사업] 합리적 운영 지원	375,000
	[과제11]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 연구	120,000
	[과제12]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	60,000
	[과제13] 서울시 어르신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시립병원 역할 연구	40,000
	[과제14]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 연구	10,000

단위 사업	세부사업 및 편성목	지출예산(천원)
총계		1,990,000
	[과제15]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55,000
	[과제16] 시립병원 통합브랜드(HI) 개발 및 홍보	90,000
	<b>[세부사업] 평가 및 컨설팅</b>	<b>210,000</b>
	[과제17] 2018년 시립병원 성과평가	50,000
	[과제18] 2018년 서울시 자치구 공동사업 평가 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	60,000
	[과제19] 퇴원 후 환자유구도 평가 및 지역연계체계 개발 연구	35,000
	[과제20] 시립병원 경영평가 및 컨설팅	55,000
	[과제21] 시립(정신)병원 회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10,000
	<b>[세부사업] 의료 질 관리</b>	<b>100,000</b>
	[과제22] 2018년 시립병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40,000
	[과제23] 2018년 서울시 보건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40,000
	[과제24] 시립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벤치마킹 및 협력학습 모델 개발	20,000
	<b>[세부사업] 공공보건의료 인재양성</b>	<b>130,000</b>
	[과제25]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70,000
	[과제26] 2018년 서울시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 및 중장기계획 수립	60,000
	거 버 년 스 플 래 트 폼	<b>소 계</b>
<b>[세부사업]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b>		<b>145,000</b>
[과제27]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건강기금(가칭) 조성		30,000
[과제28]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연구		30,000
[과제29] 서울시민 건강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방안 마련		35,000
[과제30] 서울시 보건의료분야 시민참여 실태 연구		50,000
<b>[세부과제] 서울건강포럼 운영</b>		<b>60,000</b>
[과제31] 서울건강포럼 운영		60,000
<b>[세부과제]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b>		<b>20,000</b>
[과제32] 서울시 보건의료자원 협의회 운영		20,000
<b>[세부과제] 시 사업 지원</b>		<b>45,000</b>
[과제33] 서울형 안심돌봄 사업 매뉴얼 개발		20,000
[과제34]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 확충 및 기술 지원		15,000
[과제35]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및 기술 지원		10,000

#### 가.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변경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하고자 한다면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짐.

#### 나. 중기 재정계획 반영여부

- 예산의 의결액을 정하는 안건은 아니나 서울시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매년 계획기간을 1년씩 연장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연동계획임.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가 예산편성에의 구속력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으므로 본 안건 심의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액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음.

<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751,214	4,828,140	5,869,060	6,423,966	7,034,363

※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284회 정례회에 제출될 시민건강국의 세출예산안 편성이전에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의미하며 예산액을 정함이 아닌 예산편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목적,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의지를 보이는 점, 집행부가 성실하게 예산편성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동의안의 의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음.